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8. 30 (화) 고응종 의원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05. 9. 20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5. 9. 23(금) 제12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 9. 20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고응종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18991호)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조정하고, 제명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
- 지방의회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2005. 8. 5, 대통령령18991호)으로 기초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현행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

나.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성이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부 끝.